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병준

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이수완 의원 등 7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8년 11월 21일

나.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22일

3. 제안이유

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에 따른 기존에 운영되었던 ‘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’가 ‘충청북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’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제명 변경

- 「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혁신도시 발전위원회 조례」

나.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, 위원장의 직무,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, 관계기관 등 협조요청,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2조 부터 제7조까지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이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(법률 제15309호, 2017.12.26., 일부개정)으로 개정되었음.
-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‘혁신도시발전위원회’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상위법령인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‘혁신도시발전위원회’의 기능, 구성,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, 안 제1조는 위원회 취지에 맞도록 목적을 변경하였음.
- 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위원의 임기, 위원장의 직무,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, 관계기관 등 협조요청,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
- 기타 조항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입법 예고('18. 10. 23.~'18. 10. 29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「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에 따른 기존에 운영되었던 ‘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’가 ‘충청북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’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